

제 1088 호
1992. 9. 2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상 배
편집인 : 공 보 관 이 상 진
전 화 : 731-8111~3
인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9-8111~3

시 보

차 례

● 표 빠
서울특별시로제 제 2059 호 서울특별시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 2

증											
별											

1. 1) 품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2) 보는 광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경제생존” 할만하고 내가 먼저 일터로”

2022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회의원보수금에 관한 조례(이하 "이 조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2.9.28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제 ①

● 서울특별시조례 제2959호
서울특별시의회회원보수금에 관한 조례
증기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회원보수금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관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여비는 별표 1의 현지교통비 전액으로 하고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를 "회의참석여비는 별표 1의 현지교통비 전액으로 하고 회기개시 후 필요한 날에 지급한다"로 한다.

부 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 여비 지불 기준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설정 운임	선판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속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외 땅	1	2종 정액	정액	정액	갑자 5,000	갑자 17,000	갑자 11,000	
부처장 등급	등급	정액			을자 4,500	을자 15,000	을자 9,500	800
외 땅	1	2종 정액	정액	정액	갑자 5,000	갑자 17,000	갑자 11,000	
부처장 등급	등급	정액			을자 4,500	을자 15,000	을자 9,500	800

- 비 례: 1. "갑자"는 서울특별시민재활시설·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자"는 갑자 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내에서 회의 출석 일수(여행일이나 출석 일수)이 12일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세미ナー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보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4. 설교운임부분과 출·입항운임은 세미나로 특성을 달하여, 당해 설교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항부분과 출·입항부분에 해당하는 출·입항운임을 적용한다.
 5. 수료여행비(세미나를 제외한 경우에는 특종운임을 지급)의 경우 정액은 예산한정액과 일치하는 경우로 기준으로 한다.